

국익과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석유시장의 경쟁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글·허은녕 | 서울대학교 조교수

1) 매일경제신문 2002년
10월 30일자 보도

2) 연합뉴스 2002년 11월
12일자 보도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석유제품을 직접 수입해 오는 수입석유사들이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국내정유사 제품의 품질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한다.¹⁾ SK주식회사, LG-Caltex정유,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정유사가 생산하는 휘발유의 벤젠 함량이 모두 0.3%를 기록한 반면 수입업체가 수입한 휘발유의 경우는 0.7%에서 1.1%로 나타나 국내정유사 대비 3배 이상의 함량이 검출되었다. 또 국내정유사 휘발유의 황 함량은 11ppm에서 40ppm인 반면 수입사들의 수입휘발유의 경우는 60ppm에서 119ppm으로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도 국내정유사들의 경우 황 함량이 63ppm에서 188ppm 수준이나 수입사의 경우는 220ppm에서 321ppm으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석유수입상이 MTBE를 밀수입, 휘발유를 제조한 경우도 관세청에 의하여 적발되었다.²⁾ 이 두 사건 모두 수입사의 과다한 가격경쟁이 원인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기환경오염 수준의 악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관세청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지 의문이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 5월 국내 5개 정유사와 수입사들을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과 벤젠 등의 함유량

수치를 공개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당시 환경부는 “법적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들에 대해 황과 벤젠 등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료 환경기준이 선진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무한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MTBE 사건의 경우에서도 관세청의 입장과 달리 산자부는 휘발유에 소량을 섞어 품질 조정을 한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MTBE 역시 환경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은 첨가물질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MTBE가 토양과 지하수에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³⁾ 미국 환경보호청(EPA) 역시 MTBE를 2급 발암성 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이 문제인가 아니면 높은 환경기준이 문제인가? 만약 경쟁이 문제라면 애초부터 수입사와 정유사를 경쟁시킨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석유시장에서의 경쟁방식에 여러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료첨가제 MTBE의
관리 필요성’

**특정재화의 시장에 경쟁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무작정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경쟁 당사자들간에 이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 부처끼리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산업자원부의 우려와 같은 “과당경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쟁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되고 있는 경쟁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다. 물론 위 두 가지 사건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짐작되는 경쟁은 바로 국내정유사와 석유제품수입사 간의 경쟁을 말한다.

경쟁도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경쟁을 유도할 때는 정책적인 목표가 분명하여야 하며 정책 시행이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재화의 시장에 경쟁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무작정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경쟁 당사자들간에 이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은 결코 경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궁극에는 과당경쟁으로 흘러 혼란이 초래되거나 시장지배자에 의한 독과점의 상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석유제품가격을 경쟁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과 국내석유시장에서 수입사와 정유사간에 경쟁하는 것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화하여 정유회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나, 석유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 석유제품의 환경개선경쟁을 벌이겠다는 정책은 목적이 분명하며 또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나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경쟁 확대는 일시적으로 가격하락을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소규모 수입상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결국에는 저질석유제품의 수입과 가짜휘발유의 수입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은 막대한 적자와 과잉생산설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으며 석유수입사들 역시 과당경쟁으로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체납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경제에 이득을 준다고 하기 어려우며 마땅히 새로운 경쟁제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꾸준히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소비자 정제주의”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준 지 오래다. 정유산업은 원유정제기술의 특성상 제품별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유산업의 경쟁력 향상 내지 유지를 위하여 제품수입사와의 적절한 차별을 유지하여왔다. 그리고 이를 “공정경쟁”이라고들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유사들은 문을 닫고 수입사로 업종을 전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석유수급사정이 비슷한 대만은 올해 초 원유 관세율을 2.5%에서 무세(無稅)로 전환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자국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원유 관세율 5%는 그간의 석유산업 변화에도 불구하고 20



년 이상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최근 조세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원유관세율을 무관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세금수입의 감소가 문제라면 원유세를 삭감하는 대신 석유제품에 삭감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다. 최근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탄소세나 에너지세 등 제품의 환경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정부의 국내석유시장에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원칙에 입각한 경쟁원리의 적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에너지 시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경기의 규칙이 마련되지 못했었다. 현 정부 들어 택시요금 조정과 장애인 우대를 위하여 사용되던 낮은 가격의 LPG를 승합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게 했을 때도, 석유제품가격 조정안이 유종별 특성을 반영치 않고 모든 석유제품을 같은 가격수준에서 결정, 서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도 단지 경쟁이 좋다는 경제학의 원리만을 내세웠지 그러한 경쟁의 장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

원유 관세율을 낮추고 국내정유산업의 구조 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여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적인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는데는 소홀하였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로 인한 증상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쟁이 관련산업의 경쟁력 및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사려 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으로 국내석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원유 관세율을 낮추고 국내정유산업의 구조 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여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수입사들 역시 상호간의 경쟁을 통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회사만이 시장에 남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유회사와 수입사들도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 것이 아니라 국익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